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주요 대상 사업이 법률로 상향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9378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 조문을 정비하고, 개선대책비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가 공제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금의 공제 및 환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와 인접하여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거제시와 밀양시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역철도의 평면환승 적용구간 명확화(안 제4조)

광역철도 중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연결구간’에 한하여 평

면환승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보완

나.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및 별표 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와 주요 대상사업 일부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른 시행령 규정 정비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전공제 및 환급조항 개선(안 제16조의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경우, 부담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가 개선대책비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전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 환급 시 환급사실을 시·도지사가 공고하여 알릴 수 있도록 규정

라. 대도시권 범위 조정(안 별표 1)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 관할구역에서 제외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도록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권에서 경상북도 군위군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인접한 의성군, 청송군을 대구권에 추가하며,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인접하여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거제시와 밀양시를 부산·울산권에 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3. ~ 9. 12.)

3)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철도에”를 “철도 중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연결 구간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개발면적은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16조의2제4항제3호다목 중 “법 제2조제2호다목”을 “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조제2호바목”을 “법 제2조제2호사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 내 시행하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 시, 사업 시

행자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널리 볼 수 있는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별표 1의 부산·울산권의 범위란 중 “양산시·김해시·창원시”를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로 하고, 같은 표 대구권의 범위란 중 “구미시·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으로 한다.

별표 2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초 지구계획 승인 전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제4조(광역철도) ①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도시철도 또는 <u>철도</u> 에 환승 구간이 포함되는 경우 그 환승 방식은 평면환승 방식(환승 시 환승통로의 이용 없이 동일한 승강장을 이용하여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환승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2. ----- <u>철도</u> 중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 철도의 연결 구간에 ----- ----- -----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5. ~ 8. (생략)

9. 삭제

10. (생략)

11. 삭제

12. (생략)

13. 삭제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개발면적은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

<삭제>

<삭제>

<삭제>

1. ~ 4.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5. (현행 제10호와 같음)

6. (현행 제12호와 같음)

14. (생략)

② ~ ⑦ (생략)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③ (생략)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2. (생략)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나. (생략)

다. 법 제2조제2호마목 및 이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라. 법 제2조제2호바목 및 이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⑤ (생략)

<신설>

7. (현행 제14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2조제2호바목 -----

라. 법 제2조제2호사목 -----

⑤ (현행과 같음)

⑥시·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

⑥ ~ ⑧ (생략)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 ① ~ ⑨ (생략) <u><신설></u> ⑩ · ⑪ (생략)	<u>립지구 내 시행하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 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공제할 수 있다.</u>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u>⑩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 제6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널리 볼 수 있는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u> ⑪ · ⑫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5050